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5년 지원사업 안내문

1 2025년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	미래산업팀
2		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3	마케팅·판로지원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기업육성팀
4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5		TV 홈쇼핑 입점 지원	
6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7		공공조달 등록 지원	
8		마케팅 지원	
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10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1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수출지원팀	
12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13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14	사업화 지원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미래산업팀
15		인증·특허 지원	기업육성팀
16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17		시제품 제작 지원	
18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19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소공인육성팀
20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21		ICT 디바이스 용인랩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24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	수출지원팀	
25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26		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	
2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빨간색표기**)
-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 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 협약기간 내 관외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